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77
----------	------

2023년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 권리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내용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위탁사무내용
  -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기간 : 2024.1.1.~2026.12.31.(3년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금646백만원('23년 예산)
  - 인건비 510백만원, 운영비 50백만원, 사업비 84.4백만원, 일반관리비 0.6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23.7.20.)

### 나.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개소일자 : 2012. 4. 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 시설규모 : 면적 122㎡(1층)

## ○ 위치도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제8호 및 제45조(설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내용)

### ○ 민간위탁 필요성

- 동 센터 운영은 직장맘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인노무사, 노동전문 변호사 등 전문인력의 심층상담과 분쟁해결 관련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필요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45조 등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8.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

**제4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직장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3.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4.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23.12.31.) 도래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제4조의3제1항1)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직장맘의 모·부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직장맘 고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직장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3.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충 해결을 근거리 밀착하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은평구 소재),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금천구 소재)가 설치되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붙임1).

-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해 2012년 최초 설치한 이후 계속해서 수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센터의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

<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소재지	면적(m <sup>2</sup> )	연간사업비(천원)	위탁기간	운영주체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자양동 9-13)	122 (약 37평)	645,940천원 ('23년 기준)	'21.1.1~'23.12.31. (개일: '24.1)	성동희망나눔

(단위 : 명)

계	센터장	팀장	직원
8	1	2	5

(단위 : 건, 명)

합계 ('22년)	종합상담(건)				남녀 고용 평등 (건)	일·생활 균형 (건/명)	자녀 돌봄 지원 (건/명)	역량 강화 교육 (명)
	소계	직장 내	가족 관계	개인				
23,749	4,674	4,552	25	97	621	4,556	189	2,654

4.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위탁 추진 현황>

구분	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1차	‘12.4.1.~‘13.3.31.	(사)서울여성노동자회	공개모집
2차	‘13.4.1.~‘15.12.31.	(사)서울여성노동자회	공개모집
3차	‘16.1.1.~‘18.12.31.	(사)서울여성노동자회단	공개모집
4차	‘19.1.1.~‘20.12.31.	(사)노동희망	공개모집
5차	‘21.1.1.~‘23.12.31.	성동희망나눔	공개모집 (시의회 동의 ‘20.9.15)

- 2023년 제2회 종합성과평가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인 종합상담, 노동법률 교육, 기획강좌 모두에서 전년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한 개선요구와 MOU를 체결기관 간의 실질적 협업 활동을 통한 사업추진 확대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sup>3)</sup>
- 다만 종합성과평가 결과 80.5점으로 재계약 요건을 충족(75점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동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 <2023년 종합성과평가 주요내용>

<b>주요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권 직장맘·직장대디에 초점을 맞춘 기획강좌 등을 통해 고용유지 및 일·생활균형 지원, 모·부성의 다양한 고충 해결 지원</li> <li>▶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균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여 제도적 지원 강화 노력 우수 (성동구의회, 자치구 최초 ‘여성의 고용 유지 관련 조례 제정)</li> </ul>
<b>개선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상담, 노동법률 교육, 기획강좌 모두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설정으로 목표설정의 도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li> <li>▶ MOU를 체결한 주체인 협력기관과 홍보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고는 있으나 MOU 체결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업활동을 통한 사업추진 확대 노력 강화 필요</li> </ul>

3) 서울특별시(2023.6),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pp. 5~7.

- 또한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는 자녀 돌봄 지원프로그램은 필요성 및 효과 검토 후 폐지를 권고받았음.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 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비 고
서울시 동부권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사무형	재위탁	-	3년	적정 (권고)	[권고] ○ 자녀 돌봄 지원프로그램 필요성 및 효과 검토 후 폐지(키움센터 등 연계)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4)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5)에 따라 시장의 명의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
-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6)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

4)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직장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직장맘들이 겪는 고충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7조제1항7)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동 위탁사무는 직장맘상담 및 역량 강화,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의 모성보호,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붙임 1 권역별 직장맘지원센터(3개소) 비교표**

구 분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위 치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G밸리창업복지센터 3층	은평구 은평로 245, 녹번119안전센터 2층
규 모	122㎡(약37평)	150㎡(약45.5평)	506㎡(약153평)
최 초 운영일	2012. 4. 1.	2016. 5. 1.	2017.9.15.
인 원	8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5) ※ 노무사 2명	8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5) ※ 노무사 4명(센터장 포함)	7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4) ※ 노무사 2명
위탁 기간	2021.1.1.~ 2023.12.31.(3년)	2021.5.1.~ 2024.4.30.(3년)	2022.9.15.~ 2025.9.14.(3년)
위탁 법인	성동희망나눔 (대표:이일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배현진, 이경석)	(사)노동희망 (대표:김장민)
사 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맘(대디) 고충(직장,가족,개인) 종합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li> <li>◦ 직장맘(대디) 역량강화 교육(노동법률 교육, 양육자 교육 등)</li> <li>◦ 직장맘(대디) 지원 네트워크 구축</li> <li>◦ 센터 누리집 운영 및 사례집 등 책자 발간</li> <li>◦ 직장문화 개선 등 컨설팅 추진</li> <li>◦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프로그램 운영</li> <li>◦ SNS, 뉴스레터 등 홍보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운영</li> <li>◦ 직장맘 지킴이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li> <li>◦ 모부성보호 영상 콘텐츠 개발</li> <li>◦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북권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운영</li> <li>◦ 서북권 직장맘튼튼맵 사업 추진</li> </ul>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77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 나.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제8호 및 제45조(설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동 센터 운영은 직장맘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인노무사, 노동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의 심층상담과 분쟁해결 관련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필요하다.

다.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전반

-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개소일자 : 2012. 4. 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 시설규모 : 면적 122㎡(1층)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금646백만원(2023년 예산)

- 인건비 510백만원, 운영비 50백만원, 사업비 84.4백만원, 일반관리비 0.6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23.7.20.)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45조 등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

**제4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이하 "직장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3.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4.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홍현주 (☎2133-5036)